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승 강 기 안 전 관 리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승강기 제조·수입업자, 지정검사기관 등에게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연기 기간과 분할 횟수 등을 정하고, 관리주체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중대한 고장의 범위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게 추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사고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변경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와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종전에는 정액으로만 부과하던 과태료를 위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의 기간·횟수 등(안 제15조, 제24조, 제32조 및 제35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승강기 제조·수입업자, 지정검사기관 등에게 「행정기본법」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의 기

간은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함.

나.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사실의 입력기한 규정(안 제27조)

관리주체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보험의 가입 사실을 가입 또는 재가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그 입력기한을 정함.

다.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의 입력기한 연장(안 제29조)

종전에는 관리주체가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를 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0일 이내에 입력하도록 입력기한을 연장함.

라. 중대한 고장의 범위 조정 및 확대(안 제37조)

관리주체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중대한 고장의 범위 중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를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로 조정하고, “운반구 또는 균형추(均衡錘)에 부착된 매다는 장치 또는 보상수단 등이 이탈되거나 추락된 경우”를 중대한 고장의 범위에 추가함.

마.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추가 조사 대상 조정(안 제38조)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게 추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사고 중 “중대한 고장으로 인해 이용자가 다치는 사고”를 “중대한 고장으로 인해 이용자가 다친 경우로서 고장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그 이용자에게 1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고”로 조정함.

바. 위반기간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과태료 증액(안 별표 13)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변경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와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정액으로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의무 이행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단순 부주의 등으로 통보·입력을 지체한 자와 고의로 장기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반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0. 15. ~ 11.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의 기간은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의 기간은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 ⑦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법 제73조제1항”을 “가입 또는 재가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73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5일”을 “10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호라목 중 “운행되지 않은 경우”를 “운행되지 않은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운반구 또는 균형추(均衡錘)에 부착된 매다는 장치 또는 보상수단(각각 그 부속품을 포함한다) 등이 이탈되거나 추락된 경우
제38조제2호 중 “다치는”을 “다친 경우로서 고장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그 이용자에게 1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승강기번호표지의 발급·부착)”으로 한다.

제6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7호(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및 교육기관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에 따른 과태

료: 행정안전부장관

2. 법 제8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는 제조·수입업자,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시·도지사

3. 법 제82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별표 11 비고 제6호 중 “정기검사”를 “설치검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로 한다.

별표 13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지난 처분차수는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3 제2호너목 및 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너.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4항 제1호			
1) 통보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만원		
2) 통보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		50만원		
3) 통보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100만원		
버.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법 제82조제2항 제14호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1) 입력을 하지 않은 경우			
가) 입력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나) 입력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10일 이상인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
· 제6항, 제24조제6항 · 제7항, 제32조제3항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징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자체점검 결과 입력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자체점검 후 1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중대한 사고 등의 추가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 ④ (생략)	제15조(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의 기간은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u><신 설></u>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지정인증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 ⑤ (생략)	제24조(지정인증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

<신 설>

제27조(보험의 종류 등) ① ~ ③
(생 략)

④ 관리주체는 그가 가입하거나 재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회사 등 보험상품을 판매한 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또는 재가입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게 해야 한다.

제29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은 자에게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의 기간은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⑦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보험의 종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가입 또는 재가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73조제1항--

-----.

제29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생 략)

②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체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점검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를 자체점검 후 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 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제32조(지정검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유지관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① (생 략)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현행과 같음)

② -----

----- 10일 -----
-----.

제32조(지정검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7항-----
-----.

제35조(유지관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6항-----
-----.

제37조(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고장을 말한다.

1.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장

가. ~ 다. (생략)

라.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 (생략)

<신 설>

2. (생략)

제38조(중대한 사고 등의 추가 조사) 법 제49조제1항에서 “중대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

-----.

1.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운행되지 않은 고장으로서 이
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

마. (현행과 같음)

바. 운반구 또는 균형추(均衡
鎚)에 부착된 매다는 장치
또는 보상수단(각각 그 부
속품을 포함한다) 등이 이
탈되거나 추락된 경우

2. (현행과 같음)

제38조(중대한 사고 등의 추가 조사) -----

다.

1. (생략)

2.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고장으로 인해 이용자가 다치는 사고(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 조사의 결과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제60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① ~ ④ (생략)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신설>

--.

1. (현행과 같음)

2. -----

-- 다친 경우로서 고장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그 이용자에게 1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

제60조(승강기번호표지의 발급·부착)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

-----.

②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7호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및 교육기관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에 따른 과태료: 행정안전부장관

2. 법 제8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는 제조·수입업자, 관리주

	<u>체 및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 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시·도 지사</u> <u>3. 법 제82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연 락 처	(044) 205 - 4295